

**투자위험등급 :**  
**1등급**  
**[ 높은 위험 ]**

메리츠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메리츠e-일등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리츠e-일등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메리츠e-일등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57627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메리츠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메리츠증권(주) ☎1588 - 3400 www.imeritz.com  
메리츠종합금융 ☎02 - 777 - 7720 www.imeritzbank.com  
키움증권 ☎1588 - 3400 www.kiwoom.com  
하나은행 ☎1588 - 1111 www.hanabank.com  
SK증권 ☎1599 - 8245 www.priden.com  
대신증권 ☎1588 - 4488 www.daishin.com
  4. 작 성 기 준 일 : 2009. 4. 3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09. 5. 4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  
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인터넷 전용펀드로 판매회사에 내용 게시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 이 간이투자설명서[예비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포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목 차]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	4
2. 모집예정기간 .....	4
3. 모집예정금액 .....	4
4. 펀드존속기간 .....	4
5. 분류 .....	4
형태별 종류, 운용자산별 종류, 개방형·폐쇄형 구분, 특수형태 표시등	
6. 집합투자업자 .....	4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투자대상 .....	4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6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익구조 .....	6
4. 주요 투자위험 .....	6
일반위험, 특수위험, 기타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7
6. 운용전문인력 .....	8
7. 투자실적 추이 .....	8
연평균수익률, 연도별 수익률	

##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10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 과세 .....	11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	11
기준가격 산정 및 주기, 공시장소등, 매입 및 환매절차, 환매수수료, 환매절차 등	
4. 전환절차 및 방법 .....	13

## IV. 요약 재무정보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13
-----------------------	----

# 간이투자설명서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 칭 : 메리츠e-일등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57627 )
2. 모집예정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4. 펀드존속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에 의거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
  - ①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②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 ③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증권)
  - ④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증권)
  -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

회사명	메리츠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 메리츠화재빌딩 8층 (대표전화 : 02-6320-3000)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국내주식	60% 이상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②	채무증권  (주식관련사채)	40% 이하  (40% 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이하 같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을 제외한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신

	(기업어음)	(40% 이하)	용등급이 A3-이상인 것.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이하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과 유사한 시장으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것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⑤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⑥	집합투자증권등	5%이하 (단, ETF에의 투자는 30%까지 가능)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⑦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⑧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⑨	증권의 차입	①~③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⑪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2.금융기관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내지 ③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내지 ③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

래되는 업종 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일등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인터넷 판매 전용 펀드로써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와 비교했을 때 획기적으로 적은 수수료로 상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투자자의 수익극대화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비교지수 = KOSPI2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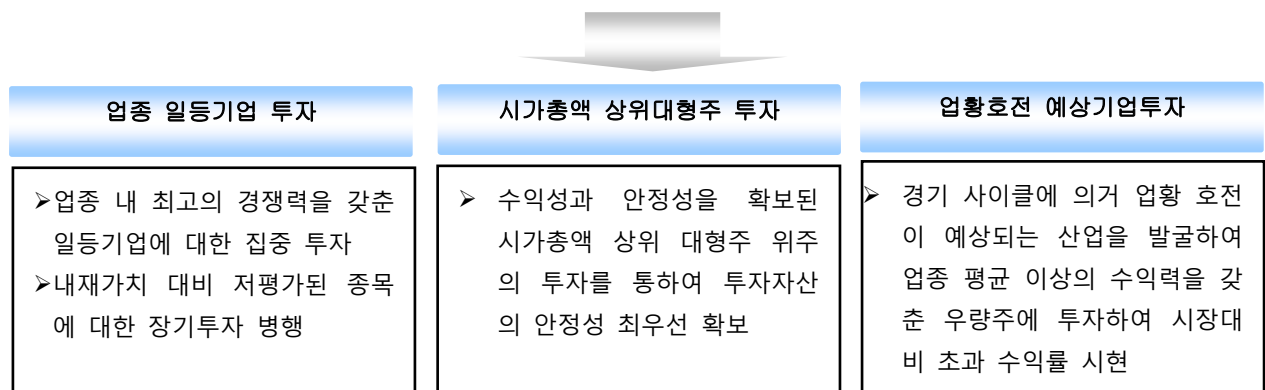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전략

집합투자자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종목들을 이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으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업종 일등기업 및 Bottom up 분석을 통한 저평가 우량종목 선정 및 거시경제/산업경기의 Top Down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자산배분 전략구사



### 2) 위험관리

피드백(사전적리스크->리스크모니터링->사후적 리스크관리)을 통한 리스크에 대한 사전 통제력을 강화하여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시행합니다.

## 3.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형으로 업종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1등기업 중심의 장기투자로 시장초과 수익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터넷전용펀드로 비용의 절감 및 우량 대표주 위주의 장기투자를 통해 고객의 수익 극대화를 도모합니다.

##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신탁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증권이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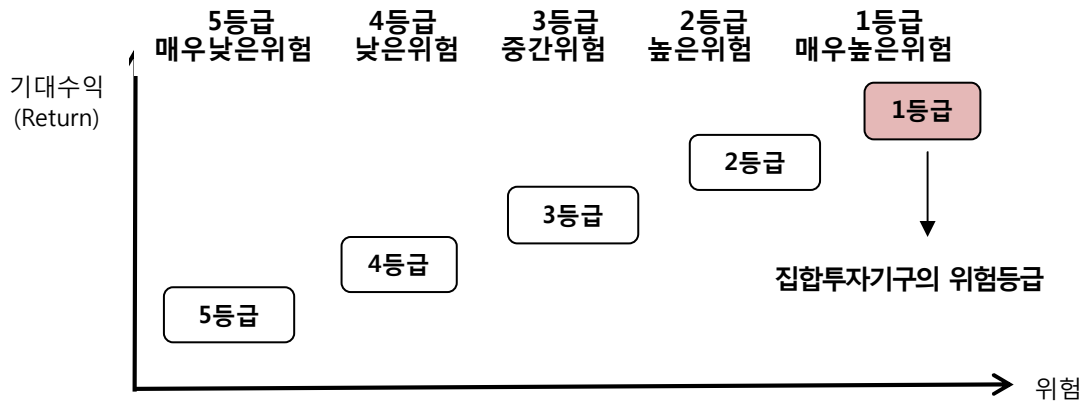
다. 기타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에 따른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증권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해지 또는 해산	1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증권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전원 동의,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시 집합투자업자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집합투자증권을 해지 또는 해산 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는 'Ⅲ.매입,환매정보'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집합투자기구는 60% 이상~최대 100%까지 주식 등에 투자하여 채권 등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큼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높은 위험등급)**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식 편입비중이 이 집합투자기구 보다 낮은 혼합형이나, 채권형, MMF 등에 비하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며, 투자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과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6. 운용전문인력

###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용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 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채홍국	45	부장	13	882억원	메리츠종합금융주식운용팀장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없음.

### ②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투신운용팀	2006.06.19-2008.07.30
채홍국	2008.07.31-현재

주 1) 2009.4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8.04.04 ~09.04.03	07.04.04 ~09.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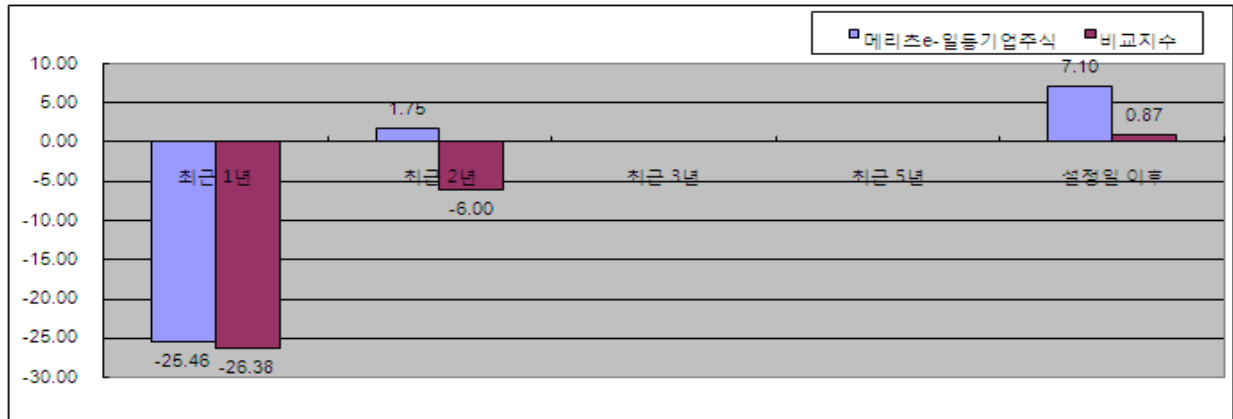


메리츠 e-일등기업 증권투자신탁(주식)	-25.46	1.75			7.10
비교지수	-26.38	-6.00			0.87

주1)비교지수 : kosp200\*100%

주2)연평균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은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연평균수익률정보는 신고서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 하 합니다.



## (2)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08.04.04 ~09.04.03	07.04.04 ~08.04.03	06.06.19 ~07.04.03		
메리츠 e-일등기업 증권투자신탁(주식)	-25.46	38.88	17.31		
비교지수	-26.38	20.02	15.99		

주1) 비교지수 : kosp2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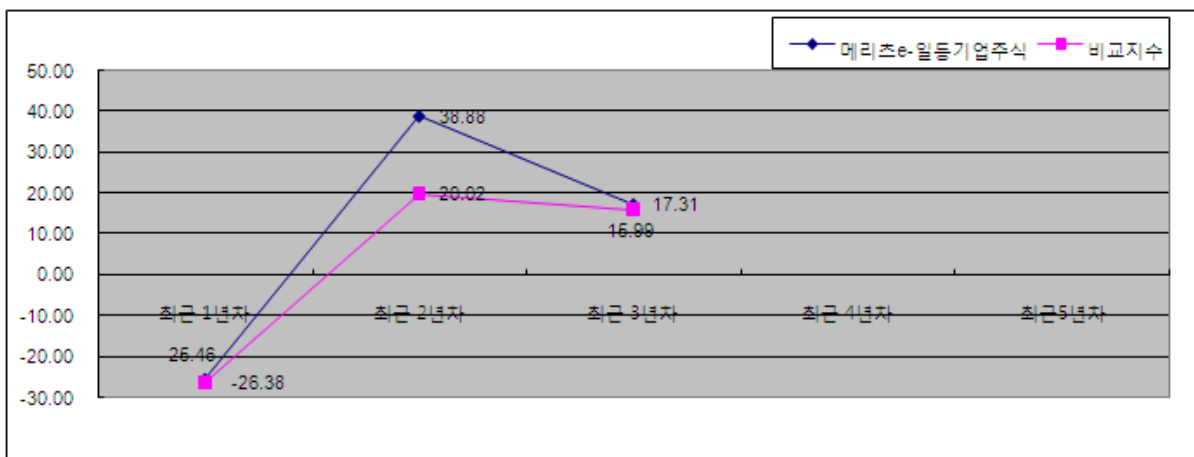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종류형펀드의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 및 그래프는 종류형 모펀드 기준입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 Ⅲ 매입·환매관련 정보

#### 1. 수수료 및 보수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25%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연 0.25%	
신탁업자 보수	연 0.025%	
일반사무관리 보수	연 0.019%	사유발생시
기타비용	0.023%	
총보수 및 비용	0.567%	
증권거래비용	1.102%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07.06.19 ~ 2008.06.18]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07.06.19 ~ 2008.06.18]. 또한, 증권거래비용은 주식 매매수수료, 채권매매수수료, 국내 Call loan중개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천원)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58	182	318	712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과세

수익자는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은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2009. 1.30현재, 개인15.4%, 법인 14.0%원천징수)을 부담하여,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입자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외상장주권 등의 매매 및 평가손실이 채권이자, 주권배당, 비상장주권평가, 환차익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07.6.1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이익보다 '07.6.1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권의 평가손실이 더 큰 경우('07.6.1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07.6.1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권 평가이익 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이익에 포함되기 때문)

### ※장기적립식 투자자 소득공제 및 세제혜택 - 2009.12.31 까지의 가입자

구분		주요내용
세제혜택		펀드이익비과세 + 불입금 기준 일정율을 소득공제 · 소득공제 : 1년차불입액 20%, 2년차 10%, 3년차 5% · 비과세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농특세 비과세포함)
요건	적용한도	거주자 1인 분기당 300만원 한도(연간 1,200만원 가능)
	가입시한	2009년 12월31일까지 가입
	투자기간	3년이상
기존 계좌 이용가능		투자대상요건이 부합되는 기존 주식형펀드에 불입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갱신하여 갱신일로부터 3년이상 불입을 약정한 경우, 계약갱신일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부터 세제혜택대상이 됨

※ 상기 적립식 주식집합투자기구의 세제우대는 2008년 10월 20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동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우대에 대한 설명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주1)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 (1)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meritzam.com">www.meritzam.com</a> ) ·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 (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주1)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매입 및 환매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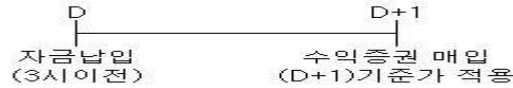
### 가. 매입

#### ① 매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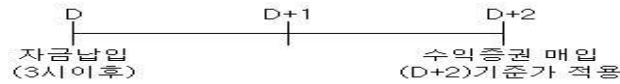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온라인을 통한 매입이 가능합니다.

#### ②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단,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정일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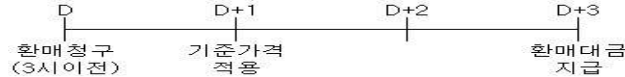
### 나. 환매

#### ①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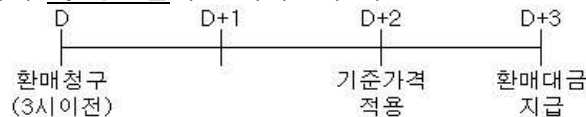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온라인을 통해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②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이 지급



#### ③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시 취소 또는 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④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 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⑤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에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환매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투자자의 환매금액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⑥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투자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⑦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⑧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⑨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가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4.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IV 요약 재무정보**

(단위: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2 기	제 2 기	제 1 기
	( 2008.12.18 )	( 2008.06.18 )	( 2007.06.18 )
운용자산	19,886,918,964	26,332,270,586	6,019,950,933
증권	17,840,960,750	24,729,103,700	5,620,717,03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467,918,684	621,613,531	279,798,349
기타 운용자산	1,578,039,530	981,553,355	119,435,554
기타자산	0	0	0

자산총계	19,886,918,964	26,332,270,586	6,019,950,933
운용부채	1,051,737,536	354,826,744	147,080,480
기타부채	8,491	5,934	1,466
부채총계	1,051,746,027	354,832,678	147,081,946
원본	27,476,237,190	25,223,555,578	3,845,293,972
수익조정금	-257,713,451	1,986,900,003	353,193,421
이익잉여금	-8,383,350,802	-1,233,017,673	1,674,381,594
자본총계	18,835,172,937	25,977,437,908	5,872,868,987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 기	제 2 기	제 1 기
	( 2008.06.19 - 2008.12.18 )	( 2007.06.19 - 2008.06.18 )	( 2006.06.19 - 2007.06.18 )
운용수익	-8,324,356,837	-1,188,226,678	1,690,907,348
이자수익	29,131,654	18,909,765	9,016,747
배당수익	12,030,500	87,339,514	56,577,985
매매/평가수익(손)	-8,365,518,991	-1,294,475,957	1,625,312,616
기타수익	-257,100,950	1,992,904,185	354,674,910
운용비용	57,113,579	48,918,257	17,119,266
관련회사 보수	57,113,579	48,918,257	17,119,266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2,492,887	1,876,920	887,977
당기순이익	-8,641,064,253	753,882,330	2,027,575,015
매매회전율	236.29	446.17	305.52